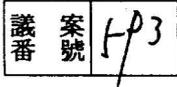


大田廣域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提出年月日：1995. 5. .

提 案 者：대전광역시장

1. 提案理由

-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9종(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시립정신요양병원은 개설당시('94.6.11개설) 보건복지부의 시설관리지침에 의거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며 정신요양기능을 감안, “정신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병원허가후 개정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제28조의4)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제외)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시립정신요양병원의 운영과 명칭이 현행의료법 시행규칙에 맞지 않으므로 병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題名 “大田廣域市立精神療養病院”을 “大田廣域市立精神病院”으로 변경
- 第1條中 “大田廣域市立精神療養病院”을 “大田廣域市立精神病院”으로 변경 (案 第1條)

3. 參考事項

○ 의료법 제3조

· 제3조(의료기관)

⑤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94.1.7)

○ 의료법 제32조

· 제32조(시설기준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질환·입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4

· 제28조의4(요양병원의 운영)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를 제외한다)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94.9.27)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을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으로 한다.

제1조중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을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p>제명 : <u>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u></p> <p>제1조(목적) 이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담당하는 <u>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 병원(이하"병원"이라 칭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명 : <u>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조례</u></p> <p>제1조(목적) <u>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u>....</p>

大田廣域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5. 6. 1.

文教社會 委員會

I.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5. 5. 24. 大田廣域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5. 5. 29.

다. 上 程 日 字 : 第42回 大田廣域市 議會(臨時會)

第1次 文教社會 委員會(1995. 6. 1)

上程, 審查, 議決

II.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 : 保健社會局長)

1. 提 案 理 由

- . 現行 醫療法에는 醫療機關의 種別을 9種(綜合病院, 病院, 齒科病院, 漢方病院, 療養醫院, 醫院, 齒科醫院, 漢醫院, 조산원)으로 區分하고 있음.
- . 市立精神療養病院은 開設當時('94. 6. 11.開設) 保健福祉部의 施設管理指針에 依據 病院級 醫療機關에 該當되며 精神療養機能을 勘案, “精神療養”病院이라는 名稱으로 許可하여 運營하고 있음.

- . 病院許可後 改正된 現行 醫療法 施行規則에는 (第28條의 4) “療養病院의 入院對象은 老人性疾患者, 慢性疾患者 및 外科的 手術後 또는 傷害後의 회복기간에 있는 者로써 주로 療養을 必要로 하는 者로 한다. 다만, 精神疾患者 (老人性치매患者 除外)는 入院對象으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어 現在의 市立精神療養病院의 運營과 名稱이 現行 醫療法 施行規則에 맞지 않으므로 病院名稱을 變更하려는 것임.

2. 主要 骨 子

- . 題名 “大田廣域市立精神療養病院”을 “大田廣城市立精神病院”으로 變更
- . 第1條中 “大田廣域市立精神療養病院”을 “大田廣域市立精神病院”으로 變更 (案 第1條)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鎮鎬)

- . 本 案件은 精神疾患者들에 대한 效率的인 治療등을 위하여 지난94年 1月 11日 大田廣域市 條例 第 2353號로 設置·運營되고 있는 「大田廣域市立精神療養病院」이 醫療法 및 同法 施行規則등의 改正에 따라 一部內容이 變動되었으므로 이를 上位法과一致시키려는 內容이 되겠음.
- . 本 改正案의 主要內容으로는 現行 本 “市立精神療養病院”의 名稱中 “療養” 削除하고 “市立精神病院”으로 規定하려는 것 인바,

이는 醫療法の 改正('94. 7. 7)으로 “療養病院”이 醫療機關의 한 種別로 追加되고 同法施行規則 第28條의 規定에는 本 “療養病院”의 入院對象을 老人性 疾患者, 慢性疾患者 또는 外科的手術後 회복기간에 있는 者등을 主對象으로 하고 精神疾患者에 대하여는 그 入院對象에서 除外토록 하고 있어 精神疾患者를 主對象으로 하고있는 本 病院의 性格을 勘案할때 現行 醫療法上 “精神療養病院”의 名稱은 適合치 못하므로 이를 “精神病院”으로 規定하려는 內容임

- . 以上에서와 같이 本 「大田廣域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改正된 上位法에 맞춰 그 名稱을 變更하려는 內容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IV. 討 論 要 旨 : 省 略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省 略

VI. 審 查 結 課 : 原 案 可 決

VII.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